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9. 2.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9. 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9. 13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안 제28조의1)

4. 참고사항

- 관련공문 : 세정과 - 7100(2005. 08. 19)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5 - 407 호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8조의1(재산세과표경감)을 신설하여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세부담을 줄여 주려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5. 9.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